



2020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백서

발 간 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제6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위촉에 이어 지난
2020년 10월 제7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으로 재위촉 되었습
니다. 안양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민원옴부즈만 운영백서 발간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활민원은 증가하였고 고충민원 역시
애로사항이 많아 큰 아쉬움이 남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고충민원의 해결은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간의 교감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대한다면 공공기관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일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간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신뢰와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운영백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하여 처리한 고충민원 중에서 복지, 건축, 노동,
주택,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쟁점과 처리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느 누구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서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최선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조 남 일

CONTENTS

I	민원옴부즈만 운영개요
1. 도입배경	8
2. 연혁	9
3. 조직 구성	10
4. 기능 및 권한	12
5. 고충민원 처리절차	13

II	민원옴부즈만 운영결과
1.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16
2. 고충민원 처리사례	28
3. 민원 중재 사례	48
4. 민원옴부즈만 활동	57

III	민원옴부즈만 활성화
1. 민원옴부즈만 홍보	72
2. 언론보도	73
3. 홍보활동	75
4.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76

IV	부 록
관계법령	78



민원옴부즈만 운영개요

1. 도입배경
2. 연혁
3. 조직 구성
4. 기능 및 권한
5. 고충민원 처리절차



T 민원옴부즈만 운영개요



1. 도입배경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인”, “변호인”이란 뜻이며, 「국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핀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4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를 설립하여 2008년 2월 9일 권익구제 창구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권익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1996년 1월 23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불편, 불만, 불안사항 해소에 노력하였다. 현행 법규나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와 행정조직이나 제도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충민원 해소, 권익보호, 제도개선, 갈등의 중재 역할을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2008년 9월 30일「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독립된 행정감찰관으로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연혁



【역대 민원옴부즈만 현황】

구분	성명	역임기간	비고
1대	송영순	2009. 1. 29. ~ 2011. 1. 28.	
2대 · 3대	황지연	2011. 4. 4. ~ 2015. 2. 4.	
4대 · 5대	송영순	2015. 2. 5. ~ 2018. 6. 28.	
6대 · 7대	조남일	2018. 10. 26. ~	



3. 조직 구성

민원옴부즈만

민원옴부즈만은 무보수·전임직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인력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정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

민원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과 관련된 직위 및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1회 연임)

민원옴부즈만위원회

민원옴부즈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10인 이내로 민원옴부즈만위원회를 구성, 위원 임기는 2년(1회 연임)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고,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위원



위원장 조 남 일
안양시민원옴부즈만 위원(2·3기)
現)경기도 시민감사관



부위원장 조 용 덕
전)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국평생교육 중앙회 회장



위원 이 은 자
샘물어린이집 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원 김 규
안양시 학원 연합회부회장



위원 이 양 학
만안청소년수련문화의집
운영위원



위원 조 철 호
포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안양시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 임 성 룡
법률사무소 집현재(변호사)
안양지원 조정위원(민사 등)



위원 조 은 희
세무법인위더스(세무사)
전)안양시결산 감사위원



위원 심 현 보
안양시 신일유치원 원장



위원 이 재 강
대림대학교 겸임교수

※ 분야 : 법률, 세무, 회계, 건축, 행정, 교육, 보육



4. 기능 및 권한

안양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 조사 결과 행정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부서에 시정 권고하고,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을 표명한다.

■ 의결유형

구분	내용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법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	조사 중 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권고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민원처리 예외대상(조례 제11조)

- 국가사무 및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 심사 청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민원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5. 고충민원 처리절차





민원옴부즈만 운영결과

1.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 고충민원 처리사례
3. 민원 중재 사례
4. 민원옴부즈만 활동



II 민원옴부즈만 운영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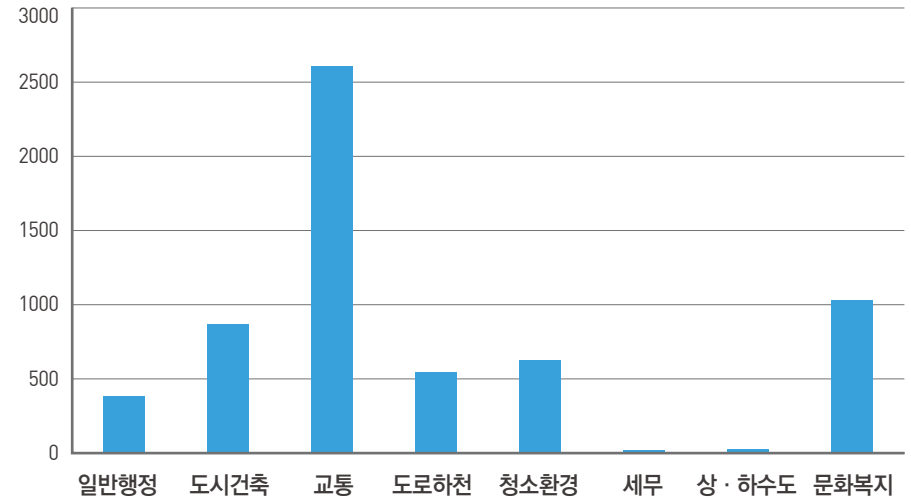
1.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가. 민원 접수 현황

- 2020년 민원옴부즈만 접수 민원은 총 6,086건으로 2019년(5,724건) 보다 6.3% 증가 하였으며, 고충민원 12건, 민원옴부즈만 홈페이지 민원 45건, 국민신문고 접수 이송민원 6,029건 이며, 분야별로 교통분야 43%, 문화복지 분야 17%, 도시건축14%, 청소환경 10%, 일반행정 분야 6%, 도로하천 분야 9%, 상·하수도 분야 및 세무 분야 1% 등이 접수 되었다.
- 불법주정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생활과 밀접한 민원과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C노선 추진사항,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이 접수 되었으며,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과의 분쟁, 신축 건물 주변 지역주민과의 의견 대립 등 상호간의 중재가 필요한 집단민원이 접수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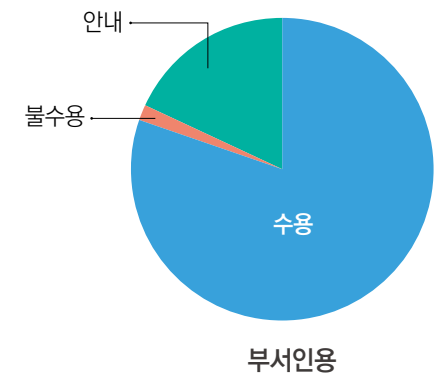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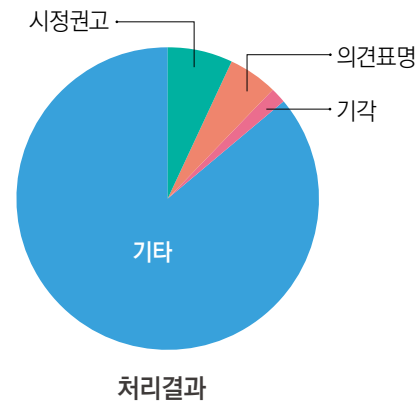
【분야별 접수 현황】

구분	계	일반 행정	도시 건축	교통	도로 하천	청소 환경	세무	상·하수도	문화 복지
계	6,086	380	868	2,604	544	622	17	24	1,027
고충민원	12		7	1	2				2
홈페이지	45	3	4	20	8	6			4
국민신문고	6,029	377	857	2,583	534	616	17	24	1,021



나. 조사 처리 현황

구분	처리 결과					부서인용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기각	기타	계	수용	불수용	안내
계	57	4	3	1	49	56	45	1	10
고충민원	12	4	3	1	4	11	9	1	1
홈페이지	45				45	45	36		9



다. 고충민원 : 민원옴부즈만 조사 처리

연번	민원내용	처리결과	부서 인용	비고
1	시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민원	민원인 토지중 일부 도로 사용면적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도로사용 면적에 대하여 시에서 매입할 것을 권고 (시정권고)	수용	
2	호계삼거리 버스정류장 명칭 변경	지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여 '호계 삼거리 디오슈페리움'으로 명칭 변경 협의 (조정)	수용 (조정)	
3	어린이집 휴지 연장	해당 어린이집은 휴지 종료기간 도래로 코로나19 종료시까지 휴지 재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행정부서의 판단은 재연장이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6조(어린이집의폐지, 휴지) 종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1년 이내 휴지를 하였으며 1년 범위내 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 (의견표명)	수용	
4	안양천 횡단교량 설치시 여유고 기준 완화 요청	도시계획시설(교량)실시계획 반대로 2년 넘게 교량설치 공사가 지연되어 건물 준공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자의 교량설치에 대한 개선안 제시와 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건물 준공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시정권고)	수용	
5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요구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6회 면담결과 건축시공사 대표와 민원인과의 중재로 합의서 작성으로 민원해결	수용 (중재)	

연번	민원내용	처리결과	부서 인용	비고
6	해외 거주하는 건물 소유주로 집수리 지원 사업 민원	타시군에 거주하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사업추진 일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건물 소유주가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안내 우편물은 주민등록지로 발송하는 등의 적극적 홍보방법 강구와 법에 지정된 공고기간은 없지만 더 많은 시민이 인지하고 준비 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 늘려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의견표명)	수용	
7	청각장애인 다문화가정 출산 지원금 민원	민원인은 청각장애인 다문화가정의 배우자로서 안양시에 거주하며 둘째아를 출산하였으나 주민센터와 보건소간의 업무이원화에 따른 미흡한 행정으로 인해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외국인에 대한 지원 구분이 없어 출산 지원금 지급 여부에 판단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자치법규 제정의 취지를 살려 출산을 장려하는 적극적 행정을 제공할 것을 시정권고 (시정권고)	수용	
8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에 관한 민원	건축사의 실수로 인한 오기로 인하여 소유권 지분을 소유한 건축주 22명의 소유권 분쟁과 취·등록세 및 양도세 등의 각종 세금이 이중과세되는 피해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바 근거자료를 통해 건축물대장 소유권지분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의견표명)	불수용	
9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철회요구	여러 차례 종결처리 후 잔여 철골조를 이용한 무단 증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무단 증축 부분과 기존 미철거된 부분까지 철거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절차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연번	민원내용	처리결과	부서 인용	비고
10	임대주택법, 매각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민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매각기일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사항임을 안내	심의 안내	
11	신축예정인 건축물 건축허가에 대한 이의제기	건물 신축시 인접 공동주택의 침수 우려에 따른 기존 하수관로 정비 및 신설 우수관 설치, 통행로 확보 등으로 민원 조정	수용 (조정)	
12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 민원	00가든빌라 거주자 중 차량소유자와 특별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도 무작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무단점유지가 47㎡의 협소한 부지로 독점적으로 부지를 무단점유한 자를 특정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에서 이용자 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 전체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권고함. (시정권고)	수용	

라. 홈페이지 민원 내역

연번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1	3번 버스 운행중지. 8번버스 왕복 운행요청	3번 노선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노선 운수 종사자들로 부터 지속적인 개선요구(노선단축)가 있어 부득이하게 노선을 단축함. 마을버스 8번은 기 답변 사안참고	안내

연번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2	평촌 터미널부지 오피스텔 건축 반대	평촌동 934번지(자동차정류장)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19년 10월 24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이 우리시에 접수되어 현재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음.	안내
3	간판 빛 공해 해결 요청	해당 업소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물 관리인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였음. 지속적으로 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힘써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수용
5	평촌도서관 열람실 및 식당 관리 요청	직원이 열람실 운영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열람지도를 실시하여 열람실의 면학분위기 조성 식당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식당 운영업체에 해당내용을 전달하여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식당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음.	수용
6	집합건물 공용부분 불법 구조변경 및 시설물훼손	현장 확인결과, 구조변경은 철거하였으며, 카페 공용 사용부분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으로 건축법에 위반사항이 없음.	수용
7	공용 주차 공간을 특정업체가 독점해서 1년내내 사용하는 불법에 대한 시정요청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무료 주차장 유료화를 진행 중이지만, 유료화 시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 증가 및 풍선효과로 인한 인근 무료 주차장 혼잡률 증가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양해 바람.	안내
8	마을6번 (한가람삼성아파트행) 버스 주말 운행 불편사항 신고	해당 민원을 해당운수(○○교통)에 전달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배차 간격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수용

연번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9	M5333 출근길 배차시간	해당운수(○○운수)에 전달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배차 간격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수용
10	공용 주차공간을 1가구가 독점해서 1년 넘게 사용하는 불법에 대한 행정조치 및 시정요청	위법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치 하였으며 정비 및 수거조치를 완료. 앞으로도 해당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수용
11	정류장 정차안하는 마을버스 5-1	당시 미(未) 준수 상황에 대한 해당 기사 의견 진술을 받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규정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 하겠으며,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교육을 강화	수용
12	1번 노선 변경 건의 (평촌더샵(아) 경유)	3번 노선의 운수종사자들로 부터 지속적인 개선요구(노선단축)가 있어 부득이 하게 굴곡 노선구간인 평촌차고지~스마트스퀘어 구간을 단축. 건의하신 1번 노선의 평촌 더샵(아) 경유하는 방안 에 대하여 해당 운수업체(○○운수)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안내
13	LED전광판 제조설치사업 관련 관외 업체인 ○○전자와 고가 거래가 많은 이유 및 관내업체제품 구입 활성화 요청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 조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되었음. 안양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적극 활용하여 적법하게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안내
14	9번 버스 기사님 신고	해당 운수업체(○○운수)에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해당기사에게 핸드폰 사용에 대한 주의 조치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받아 버스 운행과 관계없이 핸드폰 사용을 하였을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안전운행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수용

연번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15	동안구 보건소의 부정확한 안내에 의한 검사비 과다 청구와 그에 대한 구제방안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음. 동안구 보건소에는 선별에 필수적인 이동식 X-ray 장치가 없어 진료에 한계가 있어 한림대병원을 연결 안내한 것으로 빠른 시일안에 이동식 X-ray 장치를 구입하여 선별 진료토록 하겠으며, 의료비 문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토록 함	안내
16	안양도시공사 채용관련 나이제한 및 지역제한에 대한 민원	응시자의 연령 제한은『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라 매년 청년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관련 법률사항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실시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향후 법률 준수 사항이외의 채용에 대해서는 연령제한 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	안내
17	영업용차량, 건설기계 수십대가 매일 불법 밤샘 주차함 단속 요청	자가용 화물차량(흰색번호판, 녹색번호판) 및 건설기계(주황색 번호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적용 받지 않는 차량임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 차고지의 밤샘 주차로 인하여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수용
18	석수역 근처 안양천 주변 주차단속	우리 구에서는 고정형 및 이동식 CCTV와 현장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정구역만을 상시 순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해당구역에서 주정차 및 통행에 대한 불편이 있을시에 교통녹지과에 유선연락을 주시면 좀 더 빠르게 대처가 가능함을 안내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향후 단속을 강화하여 좀 더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수용
19	하수도 공사시 훼손 된 보도블럭 보수 요청	연현로 79 앞의 파손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2020. 5월중으로 정비할 예정	수용

연번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20	부림중학교 앞 길거리 담배	금연구역 표지(스티커를)를 추가로 부착하였으며 일정시간 동안 흡연행위 단속 실시. 인근 건물의 특정 학원생으로 제보하신 해당 학원을 방문하여 민원사항 전달 및 예방 당부, 앞으로도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점검 단속을 강화하여 흡연자 발견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변 금연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
21	비산동 대중교통 노선 확충 및 개선	해당 운수업체에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에 대하여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겠음	수용
22	주민센터앞 자전거공기 주입기 고장	자전거 공기주입기 정비 요청에 대하여 5월 15일까지 정비	수용
23	하천둔치 오토바이 운행 방지 시설설치 및 단속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하천 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진입을 근절시키고자 운행금지 현수막 설치와 지속적인 계도 및 활동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 경찰서 단속 협조 요청, 자전거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2차 사고 위험이 있어 설치가 어려움	수용
24	학익천 인도교 부근에 비둘기 및 잉어 과자뿌리는 행위 단속	건강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먹이주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수시 순찰로 행위를 단속 하겠습니다	수용
25	동편마을 카페거리 야외 테이블 활성화 요청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편마을의 상권 활성화 및 지역축제를 위해 동편마을 카페거리축제, 관양신바람축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	수용

연번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26	관악역 지하계단 하자 보수 관련	현재 해당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보수방법 및 일정을 조율중으로 6월 중으로 보수를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계획	수용
27	명학공원 앞 버스노선 안내시스템 수리 요청	통신장애로 5월25일(월)에 장애조치 완료	수용
28	새벽에 도로 보수 공사를 하지 말아주세요	공사 관련 관할 경찰서와 교통협의 결과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간 보다는 야간 시간대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저소음 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차량 통행 시 노면 소음이 상당히 저감된 상황임	수용
29	재개발지역 동산 이전비(이사비)미지급	주거이전비 인정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54조(손실보상 등) 제4항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산 이전비 지급방식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통보하여 이주관리 사무실에 안내문이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	수용
30	관악산 방역요청	산림 인접지역 등에 폐로문을 결합한 친환경 포충기 및 끈끈이 롤트랩을 활용한 매미나방 성충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성충의 밀도 감소 및 도심지 유입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
31	샘마을 육교 안전성	샘마을 육교는 꾸준히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물은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향후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시 즉시 조치 할 예정임	수용
32	평촌더샵 1번버스 운행요청 및 정문앞 의자철거부탁	벤치 철거 건은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휴식공간으로 철거보다는 수시로 점검 · 관리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유지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

연번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33	주말 아침부터 대형 공사장의 소음	불필요한 소음 발생 주의 및 주말 소음발생작업 자제토록 권고하여 주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도	수용
34	평촌더샵 앞 버스 운행 요청	운수종사자 부족문제 해소 등 여건 조성시 시내 버스의 평촌더샵(아) 경유 노선연장에 대해 적극 검토	안내
35	0번 버스 버스정류장 경유 없이 그냥 지나쳐감	해당 기사에 의견 진술을 받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규정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겠음	수용
36	중앙시장 상인들 마스크 좀 제대로 쓰게 해주세요	중앙시장 상인회에 전달하여 마스크 착용준수 계도는 물론 매일 3회 이상 마스크 착용 안내 방송과 안양시와 상인회 합동 캠페인 및 계도를 집중 추진하겠으며, 경기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로 '20.10.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할 예정	수용
38	좁은길 불법주정차	중앙시장 인근 구역은 현재 코로나19로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단속 유예를 실시하고 있음.(10월 4일 까지) 유예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실시 할 예정	수용
39	버스정류장 안내음 도착알림음이 너무 큼	확인결과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에서 표출되는 안내 음성 볼륨 조절 완료함	수용
40	불친절한 버스기사	해당 노선 운수종사자에 대해 주의 조치 요청과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	수용
41	○모○모 어린이집 앞 어린이공원	현장에서 흡연자를 만나 민원사항에 대한 설명 및 계도 조치하였으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폐쇄조치 및 단속을 요청	수용

연번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42	평촌더샵 경유하여 인덕원행 버스 통행요청	코로나 사태 진정 및 운수종사자 부족문제 문제해소 등 여건조성시 평촌더샵(아)에서 인덕원역 경유 노선신설 및 변경에 대해 적극 검토	수용
43	평촌더샵 인도 보도블럭 빗물차는 곳이 17곳	보도 정비는 시공사와 협의 후 침하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 보수할 예정	수용
44	평촌더샵 정문 앞 의자 주변 쓰레기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낡고 색바랜 벤치의 도색작업 등을 통해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정비 예정, 쓰레기는 담당 가로환경미화원에 전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수용
45	박달초등학교 거리 불법 주차 민원	해당지역에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주기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수용
46	과태료고지서 잘못된 주소로 수십 차례 와서 매번 반송	해당 주소지 정정변경 완료하였으며, 추후 주소지 관련 업데이트에 노력하겠음	수용
47	버스 1번 평촌역에서 직진하여 더샵 앞으로 운행 요청 및 한림대성심병원 방향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 설치 요청	평촌더샵아파트에서 인덕원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1번 버스 노선 변경 또는 그 외 버스의 노선 변경 및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한림대성심병원 방향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 쉼터 설치 여부, 버스 이용자 수, 통과 노선 수, 정류장 위치, 도착 정보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일부 수용



2. 고충민원 처리사례

I. 사유지 변상금 부과관련 민원

민원내용

- 만안구 석수동 00번지의 민원인 소유의 주택으로 이00의 주택 일부가 사유지이며 도로과에서 사유지 사용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8,196,980원을 부과함
- 그러나 개인 사유지의 일부는 현행도로로 이용 중이므로 이에 도로 사용지분 사용료와 상계처리 및 토지매입을 요청
※ 5년치 변상금 7,019,080원 / 2020년 공유재산 사용료 1,177,900원

관련부서 : 도로과

의결결과 : 시정권고

조사내용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사용면적(㎡)	사용유형	소유자	비고
석수동 00	도	1,924	47.22	일반사용	안양시	
석수동 00	대	381	25	도로사용	이00	

변상금

사용토지					사용내역		부과내역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면적(㎡)	사용유형	기간	금액(원)	
만안구 석수동	00	도	1,924㎡	안양시	47.22	일반사용	2014.12.2.~ 2019.12.1	7,019,080	변상금
만안구 석수동	00	도	1,924㎡	안양시	47.22	일반사용	2020.1.1.~ 2020.12.31.	1,177,900	사용료

※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산정방법 : 사용료 × 120%

→ 사용료 산정방법 : 해당년도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 × 사용요율 × 사용일수

판단 및 결론

- 민원인 소유의 석수동 180-0번지의 면적 381㎡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 25㎡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기하는 도로사용료 신청은 통상 소송(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통하여 법원판결에 의거 도로 관리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나, 민원인은 법적 소송을 원하지 않으며 도로사용 면적에 대하여 시와 협의하여 사용료 보상과 토지 매수 청구를 원하고 있음
- 민원인 소유의 토지 일부가 자연발생적인 도로로 이용되어 현재 인근 주민들의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도로법 제42조¹⁾ 매수청구의 절차 및 제43조²⁾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에 따라 매입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도로사용료는 변상금 부과와 같은 조건으로 민원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 함
- 그러나 민원인 소유인 석수동 180-0번내 건축물중 일부가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면적(47.22㎡) 부분에 대한 변상금 및 공유재산사용료는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도로사용료와 변상금 및 공유재산 사용료 상계처리는 불가하며 각각의 산출기준에 의거 보상과 부과가 이루어져야 함

처리결과 : 수용

-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지급 및 토지 매입 완료
-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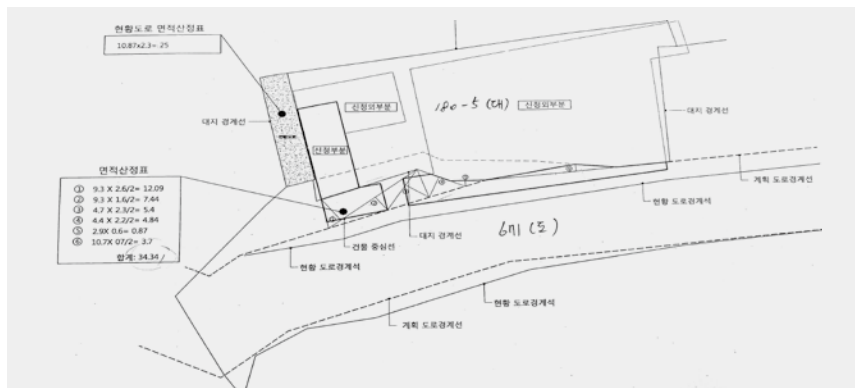
1) 매수청구의 절차

2)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 해당부서 의견

-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는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된 사항이며,
- 개인 사유지 도로 사용료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존부에 따라 소송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임
 - ▶ 현행법상 충돌은 있으나 일제 강점기 등 오랜기간 현황 상 자연발생적 도로로 인정되어 전국 지자체가 공히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음

■ 현황도



■ 현장사진



II. 어린이집 휴지연장

■ 민원내용

- 민원인이 운영하는 평안동 소재 ○○어린이집은 2019.4.5~9.5까지 휴지를 하였고 2019. 9. 6 ~ 2020. 2. 28.까지 휴지를 하고 있음. 휴지 종료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 상태이므로 코로나-19 종료시 까지 휴지 재연장을 요청함.

■ 관련부서 : 동안 복지문화과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판단 및 결론

- 민원인은 2019년 4월부터 어린이집 내부사정(누수수도관 공사)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상태인 점, 장기간 어린이집 휴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민원인을 위한 적극행정을 해줄 것을 요청
-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7 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9. 4. 5.~2019. 9. 5.(1회), 2019. 9. 6.~2020. 2.28.(2회)로 적용하여 재연장을 불가한 사항은 행정부서의 판단으로 사료되며, 민원인의 경우 2019. 4. 5일부터 2020. 2. 28까지 1년이내 휴지를 하였으며 1년 범위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행정처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민원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휴지 재연장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른 연장기간내까지 어린이집 휴지 재연장 하도록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 수용

Ⅲ. 안양천 횡단교량 설치시 여유고 기준 완화

■ 민원내용

- ○○ 지식산업센터 신축관련 주변지역의 교통량 증가 예상되어 교통 개선대책으로 호계천 복개교와 연결교량을 설치하도록 하여 진행중 교량 여유고 기준 높이 확보 시 교량의 높이가 인근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커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에 현실적인 최선의 개선안 제시와 교량의 여유고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해당부서 : 도시계획과** 관련부서 : 도로과, 교통정책과, 하천관리과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판단 및 결론

- 도시계획시설(교량) 실시계획 반력으로 2년 넘게 교량설치 공사가 지연되어 건물 준공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자의 교량설치에 대한 개선안 제시와 市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건물 준공으로 인한 예상되는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민원인(사업시행자)이 제시하는 교량설치 개선안과 관련부서와의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기에 맞춰 교량설치가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 처리결과 : 수용

- 관련부서와의 조정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음

■ 조사 확인사항

- 위 치 : 만안구 안양동 ○○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연장 68m, 폭 30.8m(왕복 4차로)

• 사 업 비 : 90억원(시행자부담)

• 사업기간 : 2019. 1. ~ 2022. 2.

■ 추진현황

- ▶ 2018. 10. 15 : 도시계획시설(교량)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2018. 11. 22 : 실시계획인가 신청(시행자 → 시)
- ▶ 2018. 11. 29 : 관련부서 협의
 - ↳ 하천관리과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설계 기준에 맞추어 교량고를 계획 홍수위 및 여유고 이상으로 서류보완
- ▶ 2019. 01. 29 : 건축허가
- ▶ 2019. 09. 18 : 실시계획인가 반려
 - ↳ 관련부서 협의의견 수용불가(홍수위 + 여유고)

■ 조정사항(관련부서 협의)

1. 복개천 상부구간 도로공사 실시에 따른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시행하고, 도로시설개선, 경수대로 교차로 신호등 공사 및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타이전 등 도로공사 및 행정적인(인허가사항 포함) 사항은 시에서 시행(도로과)
2. 하천복개 구간(호계천 복개교) 구조물 보수·보강은 사업시행자측에서 사업비 부담 및 공사시행(도로과)
3. 시·종점부 교량 연결접속도로가 높아짐에 따른 인근지역민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해결(도로과)
4. 교량의 여유고는 주변여건 등 도심 하천 교량임을 고려하여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3항(별표2) 시설기준 등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천관리과)

IV. 집수리지원 사업 공고기간 연장

■ 민원내용

- 민원인 박O는 해외에 거주하는 만안구 석수동 268-00 건물 소유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에 지원되는 집수리 사업 신청 접수 공고를 알지 못하였고, 코로나 19로 강제격리 조치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신청 기간에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함
- 주민 지원 사업이라면 공고시 신청접수기간을 3개월 ~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됨. 금년도 집수리 지원 사업 추가신청 접수와 사업 공고기간을 3개월 이상 늘려줄 것을 요청

■ 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판단 및 결론

- 집수리 지원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의 국가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어 행정업무 절차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목적에 맞게 지원이 시급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사업안내와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타 시군에 거주하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사업 추진일정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건물 소유주가 사업 신청을 해야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건물 소유주의 주민등록지로 사업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적극적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공고기간은 법에 지정된 공고기간은 없지만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사업에 대하여 인지하고 준비기간을 갖을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30일 이상 늘려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처리결과 : 수용

- 2021년 사업 시행시 사업공고 기간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 해당부서 의견

- 집수리 지원 사업은 공고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공고 기간은 14일을 기간으로 두고 있음
- 본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보도 자료, 현수막 게시(5개소), 사업구역 내 세대에 안내문 우편함 배포 등을 하여 2020년 사업량인 50세대를 초과한 68세대가 신청한 상황으로 추가 접수신청 계획은 없음

【분야별 접수 현황】

집수리 지원사업 : 안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내 주택 외부경관 개선을 위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과 지자체 재원을 투자하여 보조하는 사업으로 노후주택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으로 고시하고 5개년 계획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참고 - 지자체별 집수리 지원사업 공고기간

시군명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기간	비고
천안시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뉴딜 집수리지원사업	지붕개량비용 지원 / 주택외부에 대한 집수리 지원	2020.04.27.(월) ~05.29(금)	33일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뉴딜사업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사업	지붕, 담장, 대문, 옥상, 벽면 등 외부경관개선	2020.02.26.(수) ~03.16(월)	20일
경남 산청군	도시재생뉴딜 집수리지원사업	외벽, 대문, 지붕, 창호 등 외부경관개선	2020.03.25.(수) ~04.10(금)	17일
춘천시	약사명동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	외벽, 대문, 지붕, 창호 등 외부경관개선	2020.03.25.(수) ~04.3(금)	10일
광주 광역시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벽, 대문, 지붕, 창호 등 외부경관개선	2020.04.20.(월) ~04.27(월)	7일

V. 청각장애인(다문화가정)출산지원금 지급

I 민원내용

• 1차 민원(2020. 05. 00. 모바일앱 민원 접수)

- 청각장애인 부부로 남편 천OO는 김포에 거주자이며, 배우자 김OO(중국인)은 안양거주자로서 2019년 11월 00일 둘째아를 출산하고 11월 00일 호계O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함. 신고 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출산장려금 관련 출산등록인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여부를 물으니 보건소와 주민센터 직원이 통화를 했고, 임신축하금은 보건소에서 받아야 하며, 2020년 00월 이후 주민센터로 재방문 안내를 받음
- 2020년 5월 8일 출산장려금을 받으러 주민센터에 방문하였으나 다른 담당자가 출산장려금은 안양시 조례의 의거 부 또는 모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³⁾이어야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 2차 민원(2020. 05. 00.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출산지원금 지급요청에 담당부서에서 민원옴부즈만 제도 안내와 해결하라는 답변에 대해 기분이 상함.

• 3차 민원(2020. 05. 00. 민원옴부즈만 고충민원 접수)

- 장애인 배려가 없는 행정서비스에 불만 제기와 1차 민원과 같은 내용으로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기만 할 뿐 사과나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하니, 출산 장려금에 대한 책임을 저달라 함

3)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2항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는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1항에 의거 등록대상인 내국인(외국인의 예외로 한다.)으로 본다.

II 관련부서 : 동안 보건과

III 의결결과 : 시정권고

IV 판단 및 결론

- 민원인 김OO(중국인)은 2019년 6월 00일 안양시로 전입하였으며, 둘째아는 11월 0 일 출생하고 11월 00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센터 직원과 보건소 직원간의 명확치 못한 안내(주민센터와 보건소간의 안내 내용이 상이함)로 인하여 둘째아 출산에 대한 지원금(200만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
-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출산을 꺼리는 부부에 대한 유인책으로 각 지자체마다 형편을 달리하여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며, 전입업무 담당자와 민원인간의 상담 중 정확치 않은 안내와 특히, 안양시 출산지원에 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2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로 규정되어 있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내·외국인에 대한 지원 구분이 없어 출산 지원금 지급여부에 판단이 명확하지 않음
- 이는 행정기관의 소극적 규정 해석에 가로막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치법규 제정의 취지를 살려 출산을 장려하는 적극적 행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민원인인 김OO(중국인)은 장애를 가진 다문화가정으로 살고 있으며, 이미 두 자녀를 출산하여 혼인생활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에도 등재되어 있는 점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관련 조례 등 제도개선을 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으로 민원인이 피해를 봐야하는 점이 있음. 이를 고려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향후에는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등 조례개정 검토 및 출산지원금 접수와 지원의 행정적 이원화에 따른 정확한 업무 연찬을 통해 시민에게 촘촘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처리결과 : 수용

- 향후 동일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관련 법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음

조사 · 확인사항

- 안양시 전입일** : 2019. 6. 00.(주민등록 등재)
- 혼인신고일** : 2015. 4. 00.
- 가족관계** : 배우자(천OO), 자녀 2명
- 조사내용**
 - 민원인 김OO(중국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5. 4. 00. 한국인(천OO)과 혼인을 하였으며 2016. 0월 첫째 자녀를 출산하였고 2019. 0월 둘째아를 출산하였으며, 배우자는 김포에 거주하고 민원인은 동안구 호계0동 시부모택에 거주하고 있음. 또한 본인국적(중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관련규정 확인

- 안양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지원규모**

구분	안양시	김포시
첫째아	100만원	5만원
둘째아	200만원	5만원
셋째아	300만원	100만원
넷째아	500만원	100만원

VI. 보전등기전 건축물대장 정정

민원내용

- 세대수가 20세대인 기존건축물을 29세대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건물이 있는데 기존 20세대 중 18세대는 1인 소유, 2세대는 1세대에 2명의 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을 따라서 총 22명의 건축주로 신청, 이에 사용승인 신청 시 업무대행 건축사가 지분 작성을 각 세대별 1/20 18명, 1/40 4명으로 작성하여야 했으나 업무대행 건축사의 실수로 건축주 인원대로 세대별 1/22로 작성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 이로 인해 18명의 건축주는 1/22와 1/20의 차이만큼 적게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4명의 건축주는 1/22와 1/40 차이만큼 많은 지분을 소유
- 협약된 소유권 지분이 신축전 기존 건축물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여야 하나, 착오신청으로 인하여 현재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소유권 분쟁과 취득세 및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이중과세 되어 건축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어 보전등기전에 건축물대장 정정 요청함

관련부서 : 만안 건축과

의결결과 : 의견표명

판단 및 결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용도변경)제1항 · 제19조(건축물대장의소유자변경)제1항 · 제2항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 ·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제2항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같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실수로 인한 오기로 인하여 소유권 지분을 소유한 건축주 22명의 소유권 분쟁과 취·등록세 및 양도세 등의 각종 세금이 이중과세되는 피해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 바 건축사의 실수로 인한 오기임을 밝히는 자인서(추후 민원 발생의 부분도 책임진다는 내용 포함)와 건축주간의 상호협약(지분 정정 동의) 공증서 등 근거자료를 통해 건축물대장 소유권지분을 정정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 불수용

-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는 사항이며, 소유권 지분 등 소유에 관한 사항은 등기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사항으로, 사용승인대로 작성된 건축물대장을 소유권 변경된 관련자료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어려움

■ 건축물 개요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59-0번지
- **건축주** : 유OO 외 21인
- **규모** : 지하1층, 지상11층
- **대지면적** : 790.90㎡ /건축면적 : 281.96㎡
- **사용승인일** : 2020. 07.22
- ※ 건축물대장 기 발급현황 : 3회 3건

■ 해당부서 의견(만안 건축과)

- 석수동 259-0번지는 2020.7.22. 사용승인처리 되어 사용승인 내용대로「건축법」제 38조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 규칙') 제 12조에 따라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 사용승인 이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의 변경(정정 등)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경(정

정) 작성되는 사항으로 특히, 소유자 관련사항(지분 등) 정정(변경)의 경우 소유자, 지분 등 관련 사항 변경을 통해 공부를 일치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규칙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건축물대장 규칙 제21조 3항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에 따라 소유권이 정리(관리)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는 사항이며, 소유권 지분 등 소유에 관한 사항은 등기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사항으로, 사용승인대로 작성된 건축물대장을 소유권 변경된 관련자료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어려움

■ 관련부서 의견(시 건축과)

- 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은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는 업무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내용은 건축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시 첨부를 하며, 사용승인이 종료되면 구청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구청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시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합니다. 민원인은 현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현황의 지분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고, 제19조제2항 또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이후에 소유권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면 등기가 정리되어야만 건축물대장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축물 대장 정정을 권고하는 의견 표명이 있다면 건축물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고유 업무로서 건축물대장의 정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충처리 결과 알림(사용승인 후 보존등기 전 오류·오기에 따른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1.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4410(2020.6.23)호의 관련입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대장 생성 후에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 자료가 통지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 변경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시에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존등기 이전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다만, 사용승인 후 보존등기 전 오류·오기에 따른 소유자 변경이 불가할 경우 허위거래, 이중과세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 정정에 대한 의견표명 등의 의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소유자 표시 정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관할 지자체 관련 민원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해당 민원인 화면에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물대장 생성시 오류, 오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유자현황'이 잘못 입력되면 이후 행정절차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지분'란에는 토지지분이 아닌 건축물의 지분을 입력합니다.
-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보존등기전까지 건축물대장 소유자(성명, 주민번호, 지분 등) 변경이 불가합니다.

•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용도변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같음할 수 있다)

VII.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취소

I 민원내용

- 평촌동 00번지 00빌라 입주자 대표회는, 빌라 한쪽에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고, 관리가 안되는 공터 부지가 있어 00 빌라의 소유부지로 인지하고 정비하여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 해왔음
(평촌동 00번지 47㎡, 2~3대 정도 주차 가능)
- 이에 공터 부지 국유지로 소관부서에서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함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상금의 감액을 요청

II 관련부서 : 식품안전과

III 의결결과 : 시정권고

IV 판단 및 결과

- 2014년 00빌라 입주자 대표회에서 빌라 뒤편 공동소유 유희지를 주차장으로 정비시 인근 국유지를 착오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함
- 해당부서에서는 2014.9월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에서 국유지 사용중지를 구두로 통보한 사례가 있음. 그 이후 2020.7월 국유지 무단점유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이 있었고, 2014년 당시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근거가 없어 정보부존재를 통보함
이에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및 결과통보 요청 민원 제기 후 2014년부터 무단점유로 확인, 국유재산법에 따라 측량 후 입주자 대표회에 변상금 부과 계획 통보 후 사전통지를 한 사항임
- 2014년 국유지 사용중지에 대한 민원을 공식화하여 제대로 통제 하지 못한 행정조

치가 미흡했던 점과 00빌라 공동주택 60세대 전체의 무단점유 부지 이용에 있어서 무단점유의 관계는 부당하다고 보여짐

- 이는 00빌라 거주자 중 차량소유자와 특별한 통제가 없는 출입구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는 차량을 소유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도 무작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무단점유지는 47㎡는 협소한 부지로 2~3대 정도만 사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볼 때 독점적으로 부지를 무단점유한 자를 특정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에서 이용자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00빌라 입주자 전체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00빌라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측량된 무단점유 국유지 사용을 금지하고 원상복구 할 것이며, 부서에서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권고함

V 처리결과 : 수용

변상금 부과취소와 국유지 경계표시 및 원상복구

VI 조사현황

- 2014.0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소유 부지에 주차장 조성에 관한 유선 민원제기 → 현장에 출장하여 국유지 사용중지 구두통보
- 2020.07.07.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실적 및 불법점유에 대한 조치사항 정보공개 요청 → 2014. 당시 조치사항 공문이 없어 “정보부존재” 통보
- 2020.07.14.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및 결과통보 요청 민원제기 → 현장 출장하여 2014년부터 무단점유 확인, 국 유재산법에 따라 측량 후 변상금 부과 계획 통보
- 2020.10.20. 평촌동 00번지 현황 측량
- 2020.10.29.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5년간 변상금(4,987,430원)부과 사전통지

• 변상금 부과내역

지번	무단 사용면적	사용 유형	변상금 부과액	부과기간
소계			4,987,430원(원단위 절사)	2015.07.15.~2020.07.14
평촌동 OO	47㎡	주거	<연도별 변상금 산출내역> 2020년도 : $990,000\text{원} \times 47\text{㎡} \times 0.02 \times 196/365 \times 120\% = 599,663\text{원}$ 2019년도 : $921,800\text{원} \times 47\text{㎡} \times 0.02 \times 365/365 \times 120\% = 1,039,790\text{원}$ 2018년도 : $875,200\text{원} \times 47\text{㎡} \times 0.02 \times 365/365 \times 120\% = 987,226\text{원}$ 2017년도 : $861,100\text{원} \times 47\text{㎡} \times 0.02 \times 365/365 \times 120\% = 971,321\text{원}$ 2016년도 : $850,800\text{원} \times 47\text{㎡} \times 0.02 \times 365/365 \times 120\% = 959,702\text{원}$ 2015년도 : $822,800\text{원} \times 47\text{㎡} \times 0.02 \times 169/365 \times 120\% = 429,733\text{원}$	

※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산정 방법 : 사용료 * 120%

→ 사용료 = 당해년도 공시지가 * 점유면적 * 사용요율 * 사용일수

■ 조사현황

• 무단점유사진



■ 관련규정 확인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1.~2.생략

②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 참고사항(점유에 대한 판단)

– 대법원 선고 96다 19512 판결

[판결요지]

(1)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고, 임야를 매수하여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민원 중재 사례

호계삼거리 버스정류장 명칭 변경

민원내용

-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명칭변경 민원제기
- 버스정류장 명칭을 호계삼거리에서 ○○ 디오슈페리움으로 변경 요청

처리내용

- 담당부서와 명칭변경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전달과 방안 논의
- 명칭변경 요구 주민동의서 제출
 - 디오슈페리움 입주자 대표회 ⇒ 시 대중교통과

처리결과

- 지역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여 '호계삼거리 디오슈페리움'으로 명칭변경 조정협의

위반건축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구제요청

민원내용

- 위반건축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해결요청
 - 위반건축물 철거(행정대집행 요구)
 - 신규임차업(부동산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허가 요청

처리내용

- 2020. 3. 10. : 관련부서에 민원내용 전달 및 부서 의견 요청
- 2020. 3. 13. : 내부적 법률 검토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 2020. 3. 19. : 관련부서 실무담당 팀장회의
 - 두 부서의 각 적용 법규에 위법사항은 없으나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법규 개정 건의 등)을 해 줄 것을 당부
 - 부서 의견
- 건축과(건축지도) :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조치로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부과, 건축물관리 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 등 행정 조치를 다 한 사항으로 행정대집행은 불가함
-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불가함

처리결과

- 담당부서에서 법규를 벗어나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법규 개정에 대한 촉구로 민원인에게 안내

건물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민원

민원내용

- 2019. 하반기부터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건축관련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시 건축과)
- 민원인의 피해보상 요구액과 시공사 피해보상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해결이 되지 못함

처리내용

- 2020. 4. 7. : 민원인과 면담(피해사항과 민원인 보상금액 파악)
- 2020. 4. 8. : 건축주와 면담(협상의사 없음)
- 2020. 4. 9. : 민원인에게 건축주 의사 전달과 보상금액 조정 의견 전달
- 2020. 4. 30. / 5. 11. : 건축감리사 면담
 - 건축주 설득과 재협상 의사전달
- 2020. 5. 11. : 민원인과 재협상 의사 확인
 - 본인 보상금액외 협상거부
- 2020. 5. 14. : 담당부서 요청
 - 민원인과 시공사와의 대면 면담을 통해 최종 합의 중재요청
- 2020. 5. 20. : 민원인, 시공사 대표, 담당부서팀장 협의

처리결과

- 민원인과 시공사대표 최종 합의하여 합의서 작성 교환 후 민원종결

사회복지시설 이전 반대 민원 중재

민원내용

- 동안구 관악대로 300-0에 이전 예정인 남자 단기 생활시설 청소년 쉼터 공사관련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40세대가 청소년쉼터 이전을 반대하며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구

처리내용

- 2018. 9월부터 청소년쉼터 이전 사항을 검토하여 부동산 매입을 완료하고 입주를 위한 철거공사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청소년 쉼터임을 알게 되어 시설이전을 반대함
- 2020. 3월부터 내부 철거공사 시작부터 민원제기
 - 전화민원 11회 / 국민신문고 4회 / 현장방문 민원 2회 / 부서항의 방문 1회
- 2020. 4. 8. : 부서 항의 방문시 시장님 면담요청
- 2020. 4. 16. : 민원옴부즈만 면담(민원인 4명)
 - 건물에 위험요소가 많은데(뒤편에 평상시에도 음침하고 사고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건물 관리 경비원이 없음) 비행 청소년시설이 이전하면 위험함이 더할 것이다.
 - 소방법으로 인하여 계단 등은 항상 오픈되어 있어 청소년들 범죄 등 사고위험이 있으며 특히,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어서 쉼터 이전 시 주민들의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
 - 주변에 모텔 밀집지역으로 쉼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줌
- 2020. 4. 21. 10:00 법인대표 면담
 - 법인과 입주민들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니 쉼터관련 협의는 시 관련부서(교육청소년과)에서 하도록 법인은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
- 2020. 4. 21. : 담당과장, 팀장 면담
 - 주민들과의 대화시 주민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당부

• 2020.4. 22. ~ 4. 27.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대표자와 연락 하였으나 4.23일 주민들 자체 회의에서 무조건 시설 이전을 반대하며 시장면담을 요구,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의견
- 시장님 면담전 주민들의 담당국장(복지문화국장)과의 면담을 추진 하도록 담당 부서에 통보함
- 주민들이 쉼터 이전을 주장하는 다른 장소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함

• 관양시장 문화센터,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 민원옴부즈만의 중재를 공무원 입장에서 처리하려 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2020. 5. 7. : 민원인들과 시의원 간담회

- 주민 입장과 시(법인)의 의견대립으로 중재안 도출을 하지 못함

【 자체 현장 확인조사 】

- 출장일시 : 2020. 4.21(화) 16:00
- 출 장 자 : 2명(민원옴부즈만 팀장, 조사관)
- 확인사항 : 주변 상황 확인 및 상가와 아파트 출입구 분리 상태
 - 주변에 모텔들이 많고 1층 상가와 아파트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으나 완전 분리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 상가와 아파트 관리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상가는 앞· 뒤 출입구가 오픈되어 있고, 입주민 출입구는 투명유리로 분리되어 있으나 출입이 가능(주간에는 경비원 근무)

■ 처리결과

- 민원인들에게 중재안 도출을 위한 만남 요청했으나 불응으로 중재 불가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조합과의 갈등 중재

■ 민원내용

- 동안구 목련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상가 소유주 및 단지내 유치원에서 리모델링 추진 조합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 소송중이며, 상가와 유치원과의 의견 조율없이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시의 중립적 태도 요청, 건축심의 도면 공개를 요구

■ 처리내용

• 민원인과 담당부서 면담

- 면담자 : 민원인 4인 및 담당팀장, 담당자
- 일 시 : 2020. 7. 2.(목)
- 내 용
 1. 단지 상가 및 유치원의 민원사항을 건축심의시 의견을 제시할 예정
 2. 심의도면은 정보공개 청구하면 제공할것음
 3. 사업시행시 상가와 아파트간의 대지분할권에 대하여는 쌍방간의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
 4. 건축심의를 건축전문가들이 사업 설계도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회의임으로 일반인들은 참석이 불가능함

■ 처리결과

- 민원인 대표 면담을 통한 담당부서 의견 설명과 향후 처리계획 청취 후 중재 완료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유보 및 이행강제금 취소화 민원

민원내용

- 동편마을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유보
- 이행강제금 취소화 요청

처리내용

- 2020. 7. 16.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다수 민원인 면담
- 2020. 7. 20. : 동안구청장과 민원인들과의 면담
 - 해당부서와의 간담회 진행
 - 행정조치 유보와 이행강제금 최소 부과 요청

처리결과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기간 연장
- 공시지가와 건물내 상황에 따라 부과금액 최소화



덕천지구 재개발관련 장기집회 민원

민원내용

- 2016년 부터 안양7동 덕천지구 재개발로 인한 재산피해와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요구
- 요구사항
- LH에 보상(약 2억7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중재요구
 - 종전 소유주택 시세차액 : 약 1억 2천만원
(또는 현재 거주 중인 LH 임대주택 소유권 이전)
 - 강제집행에 따른 신병치료비 등 : 약 1억5천만원

처리내용

- 2019년부터 민원 면담 : 8회
- 공사 시행사 LH와의 해결방안 논의 : 2회
- 전국철거인연합회장 및 사무국장 면담 : 3회
 - ※ 집회인 지원사항('14년 2월 20년 장기임대주택 알선)
 - 군포시 산본동 1000-O(면적 95㎡), 보증금 992만원 / 월20만원(시세 20% 수준)
-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 : 8회

처리결과

-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은 없음을 민원인에게 이해시킴
- LH매입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과 소유권이전 불가능
- 주거지원 방안 제시 등 장기집회 철수를 위한 민원인 설득 진행 중

신축예정 건축허가에 대한 이의제기

민원내용

- 신축예정 건물로 인하여 보행통행로가 막히고 하수와 우수관 이설로 폭우시 00빌라로 역류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취소 요구

처리내용

- 2020. 9. 7. : 호계동 00빌라 현장확인(팀장, 조사원, 주민대표 3명)
 - 우수관, 하수관 확인 및 창성빌라 구조확인 및 주민의견 청취
- 2020. 9. 9. : 민원인 면담(위원장, 주민대표 3명, 팀장, 조사원)
 - 신축 예정건물로 인한 피해호소와 건축시 주민들 의견 수렴과 중재를 요청 주민의견 취합하여 의견서를 송부요청함
- 2020. 9.10. :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건축분야 전문위원(조○○) 자문 청취
- 2020. 9.14. : 건축주와 조정(위원장, ○○○시의원, 건축주, 담당부서)
 1. 통행로 65cm 확보
 2. 우수관, 하수관은 기존 설치안대로 설치
 3. 정화조 변경은 건축설계상 변경이 어려움 환기구를 최대한 멀리 설치
 4. 빌라 주민들에 대한 재산적 피해는 건물 완공후 건축주가 판단하여 처리하겠음

처리결과

- 민원인 대표 면담(2회)을 통한 조정안에 대한 설명과 수용여부 확인 후 중재완료



4. 민원옴부즈만 활동

가. 민원옴부즈만위원회 회의



- ▶ 일 시 : 2020. 1. 15.
- ▶ 안 건 : 사유지 변상금 부과 민원



- ▶ 일 시 : 2020. 5. 13.
- ▶ 안 건 : 집수리 지원 사업 민원



- ▶ 일 시 : 2020. 6. 17.
- ▶ 안 건 : 민원옴부즈만 활성화 운영 논의



- ▶ 일 시 : 2020. 8. 25.
- ▶ 안 건 : 건축물대장 정정
(지분) 신청 민원



- ▶ 일 시 : 2020. 10. 28.
- ▶ 안 건 : 장기민원 해결 논의



- ▶ 일 시 : 2020. 11. 18.
- ▶ 안 건 :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 민원

나. 민원 의견 청취 간담회

- 도시계획시설(교량) 여유고 설치기준 완화 요청(2020. 3. 23.)



-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민원중재(2020. 5. 20.)



• 민원해결 부서 조정회의(2020. 5. 20.)



• 민원해결 부서 조정회의(2020. 5. 20.)



• 동편마을 불법건축물 관련 의견청취(2020. 7. 16.)



• 국유지 변상금 관련 민원 현장확인(2020.11. 6.)



• 신축 예정인 건축물 건축허가에 관련 집단민원 면담 및 회의(2020. 9. 8.~ 9. 17.)



• 장기민원 해결 내공사 및 담당부서 논의(2020. 11. 19.~ 11. 30.)



다. 민원옴부즈만 대통령 표창 수상

- 수 상 자 : 조남일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 훈 격 : 대통령 표창 (개인표창)
- 유공분야 : 옴부즈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옴부즈만 설치·제도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
※ 지방옴부즈만 중 유일한 대통령 표창 수상자임
- 표창수여 :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행사(2. 27)시 수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기념 행사 취소
※ 방문전달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최명식 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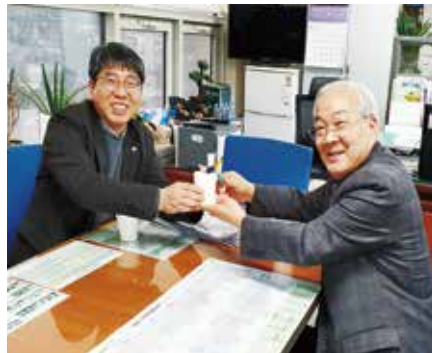
민원조사기획과 최명식 서기관 | 조남일 민원옴부즈만 | 송재우 자치행정과장

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민만족 공무원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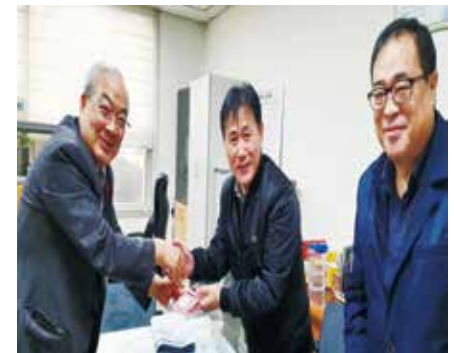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옴부즈만 제도를 인식시키고 공무원들의 고충을 들어 이해와 협력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함
- 기 간 : 2019. 4. ~ 계속 / 매주 화요일
- 방 법 : 해당 공무원 소속팀 및 격무부서 직접 방문 격려
- 선정기준
 - ▶ 주간 국민신문고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만족」 평가를 받은 직원
 - ▶ 협업의 필요성이 있으며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
- 격 려 품 : 연금매점 쿠폰(2,000원) /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지원
- 추진내용 : 27회 / 9명 / 18개부서 / 1,144,000원
※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3월 ~ 7월 중단



👤 직원 및 부서 격려



👤 직원 및 부서 격려



👤 직원 및 부서 격려



👤 직원 및 부서 격려



마. 부서 업무 협의를 위한 소통 활동(서한문 발송)

안녕하십니까?
민원옴부즈만 조남일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10월, 제7대 민원옴부즈만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평범했던 삶이 송두리째 파괴당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절박의 감정을 느끼게 될까 두렵기까지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백신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 판도라의 상자 맨 구석에서 발견된 “희망” 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많은 업무와 급변하는 코로나 19의 상황까지 더해져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안양시민들께서 오늘도 안심하고 생활하실 겁니다.

2년여의 민원옴부즈만 생활을 뒤돌아보니 고충민원의 해결의 시작은 서로간의 교감이 먼저였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면 어떠한 민원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통한 신뢰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7대 민원옴부즈만을 시작하며 아래와 같은 마음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양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어떠한 민원이라도 수용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의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둘째는 공직자 여러분을 많이 칭찬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옴부즈만과 협업하는 공직자에게는 즐겁고 신바람나는 공직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의 걸음은 느리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가기 때문에 소가 천리를 가듯, 더디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항상 공직자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조 남 일 드림



민원옴부즈만 활성화

1. 민원옴부즈만 홍보
2. 언론보도
3. 홍보활동
4.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III

민원옴부즈만 활성화



2. 언론보도

■ 중부일보 (2020. 03. 03.)

조남일 안양시민원옴부즈만, 대통령 표창 수상

A 정현하재흥 | @ 입력 2020.03.03 19:45 | 댓글 0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은 조남일(가운데) 안양시민원옴부즈만의 모습. 사진=안양시청

안양시는 조남일 안양시민원옴부즈만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옴부즈만 분야 유공에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민원옴부즈만은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감찰관이다.

조 민원옴부즈만은 2018년 10월부터 제6대 안양시민원옴부즈만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고충민원 해결 및 갈등민원 중재 협력자로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전국이 다 힘든 상황에서 대통령표창을 통해 안양시에 힘을 보태 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 해결에 더욱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8년부터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왔다.



1. 민원옴부즈만 홍보

■ 시 홈페이지 홍보



■ 안양시 공식 블로그



서원과 도서관에 새겨진 책, 그 속에 숨겨진 무려 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 있다. 바로 오늘날 시민들을 위한 '안양'의 길잡이인 민원옴부즈만이다. 민원옴부즈만은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하며,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돕는다. 민원옴부즈만 제도는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돕는다.

조남일 안양시민원옴부즈만 영예의 대통령 표창 수상

정서영 기자 synews21@naver.com 등록 2020.03.03 11:40:07

URL복사



▲ 조남일 안양시민원옴부즈만 영예의 대통령 표창 수상

(비전21뉴스) 안양시는 조남일 안양시민원옴부즈만이 지난 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 옴부즈만 분야 유공에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민원옴부즈만은 법과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과의 협력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제도이다.

조남일 민원옴부즈만은 2018년 10월부터 제6대 안양시민원옴부즈만으로 활동을 시작, 고충민원 해결과 갈등민원 중재 협력자로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조 민원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태호 안양시장 이하 공직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영광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전국이 다 힘든 상황에서 대통령표창을 통해 안양시에 힘을 보태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 해결에 더욱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 홍보활동

■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홍보 배너 설치



대형 배너



탁상용

■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민원옴부즈만 탁상배너



안양6동



석수1동



비산3동



4.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면책제도(근거:「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0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 또는 감사대상 기관(부서)의 장은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국민권익위원회 훈령)」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극행정면책 기준: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



IV

부 록

관계법령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9. 30. 조례 제2109호

개정 2010. 10. 7. 조례 제227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9. 20. 조례 제2347호

일부개정 2014. 11. 14. 조례 제257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제도인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시민행정관인 민원옴부즈만이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 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2장 책무

제3조(민원옴부즈만의 책무) ① 민원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민원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원옴부즈만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의 기관책무) ① 시는 민원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민원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제도의 적정하고도 원활한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6조(설치 및 지위) 민원옴부즈만은 무보수·비전임직으로 하여 시장의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7조(구성 및 자격) ① 민원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 ② 민원옴부즈만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 ③ 민원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④ 민원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원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⑤ 민원옴부즈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⑥ 위원장은 민원옴부즈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⑦ 민원옴부즈만과 위원회 위원은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8조(겸직 등의 금지) ① 민원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민원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민원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원옴부즈만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장 민원옴부즈만의 관할 및 기능

제11조(관할) ① 민원옴부즈만의 직무관할은 시 및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옴부즈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1. 국가사무 및 중앙 행정 기관에 관한 사항
2.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소송, 헌법 재판소의 심판, 헌법 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6.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 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7. 민원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2조(기능) 민원옴부즈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2.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및 처리

3. 스스로 발의한 사안의 조사
4. 제2호와 제3호의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 권고
5.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6. 제4호 및 제5호의 시정권고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결과 통보 요구

제5장 고충의 처리 등

제13조(고충의 신청) 시민은 시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민원옴부즈만에게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고충의 신청절차) ① 고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민원옴부즈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단체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고충의 신청목적 및 사실이 있었던 일시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고충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제15조(고충의 조사 등) ① 민원옴부즈만은 고충을 접수한 때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30일 이내에 조사를 종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2. 고충을 신청한 자(이하 “고충신청인”이라 한다)가 고충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고충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③ 민원옴부즈만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 할 경우와 고충처리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의의 통보) ① 민원옴부즈만은 신청된 고충 또는 스스로 발의한 사안(이하 “고충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원옴부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실제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신청인에의 통지) 민원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고충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민원옴부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민원옴부즈만은 고충 등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시의 관계부서는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 민원옴부즈만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시의 관계부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민원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원옴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통보가 있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공표) ① 민원옴부즈만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민원옴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대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기구) ① 민원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는 자치행정과에 두고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0. 10. 7, 2011. 9. 20, 2014. 11. 14>

② 민원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운영상황의 통보 등) 민원옴부즈만은 매년 이 조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에 통보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10. 10. 7 조례 제22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0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감사실”을 “자치행정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2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 력할 책무를 진다.

-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1. 7.]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

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 ⑤ 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4. 16.>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내부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 4. 1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 4. 16.>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16.〉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 4. 16.〉

제60조(조사결과와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결과와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6.11.] 제60조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 1. 신분보장신청인
 -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 참고인
 - 4.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

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6.>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6.>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

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6.>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4. 16.>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4. 16.>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4. 16.>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1조의3(국민권의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
 - 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5. 28.>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2019. 12. 10.>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 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 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 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 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9. 4. 16.]

[시행일 : 2020.6.11.] 제90조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부칙 <제16827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